

의정부지방법원 2016. 4. 21 선고 2015가단112351 판결 [건물철거,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뉴코리아웰빙홀딩스

피고1. A

2. B

3. C

4. D

변론 종결2016. 3. 24.

판결 선고2016. 4. 21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B, C은,

1) 남양주시 E 도로 4,084㎡ 중 별지 도면 표시 27, 28, 29, 30, 31,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ㄹ)부분 화장실 3㎡, 같은 도면 표시 32, 33, 34, 35,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ㄱ)부분 연탄창고 1㎡, 같은 도면 표시 36, 37, 38, 39, 40, 41,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ㅂ)부분 구조물 4㎡, 같은 도면 표시 42, 43, 44, 45, 46, 47, 48, 49,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ㄷ)부분 검정차광막 구조물 30㎡, 같은 도면 표시 50, 51, 52, 53, 54, 55, 56, 57, 58, 59, 60,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ㅇ)부분 검정차광막 구조물 85㎡, 같은 도면 표시 58, 59, 60, 65, 64, 63, 62, 61, 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ㅅ)부분 목재 구조물 3㎡, 같은 도면 표시 66-67, 68-69, 70-71-72, 41-73, 74-75의 각 선을 연결한 철망 담장을 각각 철거한 후 그

부분 토지 126㎡를 인도하고,

2) 2015. 7. 11.부터 위 토지의 인도일까지 매월 218,1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A은

1)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5, 16, 17, 18,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ㄱ)부분 출입구 6㎡, 같은 도면 표시 14, 15, 18, 19, 20, 21, 22,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주거용 하우스 116㎡, 같은 도면 표시 23, 24, 25, 26,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ㄷ)부분 하우스 24㎡를 각 철거한 후 그 부분 146㎡를 인도하고,

2) 2015. 7. 16.부터 위 토지의 인도일까지 매월 165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피고 D는 남양주시 F 임야 6,603㎡, G 임야 9,053㎡, H 임야 674㎡의 각 지상에 식재한 수목을 수거한 후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송진호

별지